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9. 한일용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1. 12.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권영숙 의원

-

가. 제안이유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침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에게 방범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침입범죄', '방범시설' 용어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 활용 의무화(안 제5조)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신설(안 제8조)

4) 방법시설 설치 지원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안 제9조)

3. 검토보고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이루고자 제안되었음.
- 안 제2조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침입범죄’, ‘방법시설’의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8조는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의2 및 안 제9조에서는 범죄 취약계층에게 방법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종합의견

-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¹⁾가 높아지고 있음.
-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활동에서 사전예방활동으

1)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부녀자 납치살인(김일곤 사건), 2016년 강남역 문지마 살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가

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까지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시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범죄예방 환경혜택을 제공하기에 역부족한 면이 있었음.
- 이러한 제한적 사항을 지방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방법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